

소사원시 복선전철 공동수급약정서(공동이행방식)

제1조(목적) 이 약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,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「소사원시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」 계약 ('17. 9. 1)에 대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을 정함에 있다.

1. 계약건명 : 소사원시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
2. 계약금액 : 2,268.8억 원(VAT 별도, 2006. 6. 1. 불변가)
3. 발주자명 : 이례일(주)

제2조(공동수급체)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명칭, 사업소의 소재지, 대표자 성명은 다음과 같다.

1. 명 칭 : 서울교통공사
2. 주사무소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
3. 대 표 자 성 명 : 김태호

제3조(공동수급체의 구성원)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.

1. 서울교통공사(대표자 : 김태호)
 2. 소사원시선운영(주)(대표자 : 장상덕)
-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서울교통공사로 한다.
-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,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.

제4조(효력기간) 본 약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,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. 다만,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·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약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.

제5조(의무)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·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.

제6조(책임)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

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.

제7조(하도급)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8조(손익의 배분)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협의하여 공유하거나 분담한다.

제9조(비용의 분담)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, 재료비, 노무비, 경비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.

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,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~~제작자/제작~~에 보관하며, ~~납부를 완료하는~~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.

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. 다만,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제10조(권리 · 의무의 양도제한) 구성원은 이 약정서에 의한 권리 ·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11조(중도탈퇴에 대한 조치)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.

1.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
2. 파산, 해산,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. 다만, 잔존구성원만으로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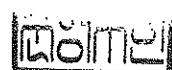
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탈퇴에 따라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2조(하자담보책임)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13조(운영위원회)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.

② 이 규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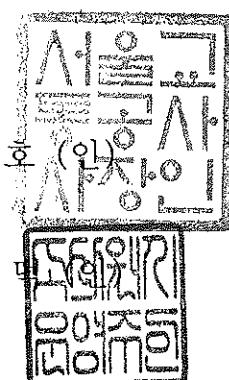
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발주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.



2018년 6월 14일

공동수급체 : (대표자) 서울교통공사

사장 김태호 (인)



소사원시선운영(주)

대표이사 장상민 (인)

